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71호

2016. 9. 22.(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1917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6-1918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6-1926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6-1927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16-1928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 고 시

제2016-292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제2016-293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3
제2016-294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5
제2016-295호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

◆ 공 고

제2016-1881호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27
제2016-1891호 2016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28
제2016-1893호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	29
제2016-1896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29
제2016-1897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30
제2016-189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0
제2016-19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2
제2016-1905호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33
제2016-1906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34
제2016-1911호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34
제2016-1919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36
제2016-192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가톨릭대학교)	39
제2016-1923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40

◆ 구 고 시

제2016-103호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41
제2016-10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용산구)	42
제2016-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45
제2016-50호 중랑구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47
제2016-8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노원구)	48
제2016-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51
제2016-1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	53
제2016-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	55
제2016-8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57
제2016-89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서초배수지) 변경(폐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59
제2016-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강남구)	60

◆ 구 공 고

제2016-65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재공람 공고(용산구)	63
제2016-997호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양천구)	66
제2016-11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강서구)	67
제2016-1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구로구)	67

◆ 사업소고시

제2016-1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69
------------------------------------	----

◆ 사업소공고

제2016-18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70
제2016-18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81
제2016-21호 소방시설공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고(송파소방서)	84

◆ 기 타

제2016-3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86

◆ 정 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26호 87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17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명시(안 제1조).
- 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법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제4조).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기금관리공무원 규정 신설(안 제16조)
- 라. 현금 일시전용 규정 삭제(안 제8조)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15조)
- 마.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iosephi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18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개발기금 용자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4조로 명시(안 제2조, 제3조)
-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매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8조로 명시(안 제8조)
- 다.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조례로 이관하고 규칙에서 삭제(안 제7조)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iosephi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6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감리자의 책임강화, 감리대가기준 마련, 감리업무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감리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절차 신설(안 제18조의2)
- 나. 감리조정위원회 역할 및 운영 기준 신설(안 제18조의3)
- 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18조의4)
- 라. 공사감리자 업무 범위 신설(안 제18조의5)
- 마. 공사감리자 등록 및 지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별표 5)’ 과 서식(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건축기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02-2133-0750 E-mail: ks7175@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건축공사감리제도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국장 : 정유승 건축기획과장 : 한병용, 건축정책팀장 : 박순규 담당 : 김성화							
4. 근거법령명등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관 련 규제수		2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2의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6. 규제존속기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폐지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 제의 내용	○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안 제18조의2 신설)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안 제18조의4 신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제도가 개정되고, 위 법령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개정취지에 맞게 공사감리자의 등록 신청 및 지정 자격, 등록 취소 대상, 공사감리 비용 산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의 신설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관련협회 협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실현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별도의 대체수단은 없으며 및 기존 규제 중복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별도의 행정기구 및 예산 필요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시장경쟁제한 요소 및 기업 활동 저해요소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조례안에 기준 및 절차 등 규제 내용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에 적정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7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한 평가방식(성과관리체계)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관련 조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조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3조, 15조)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관장 계약해지 관련 조항은 삭제(안 제6조)
- 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6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6, FAX: 02)2133-0822, E-mail: ysjang65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8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시 성과관리체계로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수정 (안 제3조, 제5조, 제6조)

나.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36, FAX : 02)2133-0822, E-mail : ysjang65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2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종로구 지역의 전력소요량 급증에 따른 정전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점	종점	경과지	연장(m)			
신설	전기 공급 설비	송전 선로	중구 무교동 93	종로구 관수동 150-6	청계천로	1,035.0 (심도 21.6m~29.9m)	2,922.8	-	도 로 (중로3류), 하 천 중복결정

나.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전기공 급설비	•위치 : 중구 무교동 93 ~ 종로구 관수동 150-6 •연장 : 1,035.0m	• 중구·종로구 지역의 하절기 및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시 전력공급 용량 최대부하 발생에 따른 정전이 우려되는 바, • 중구·종로구지역의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도(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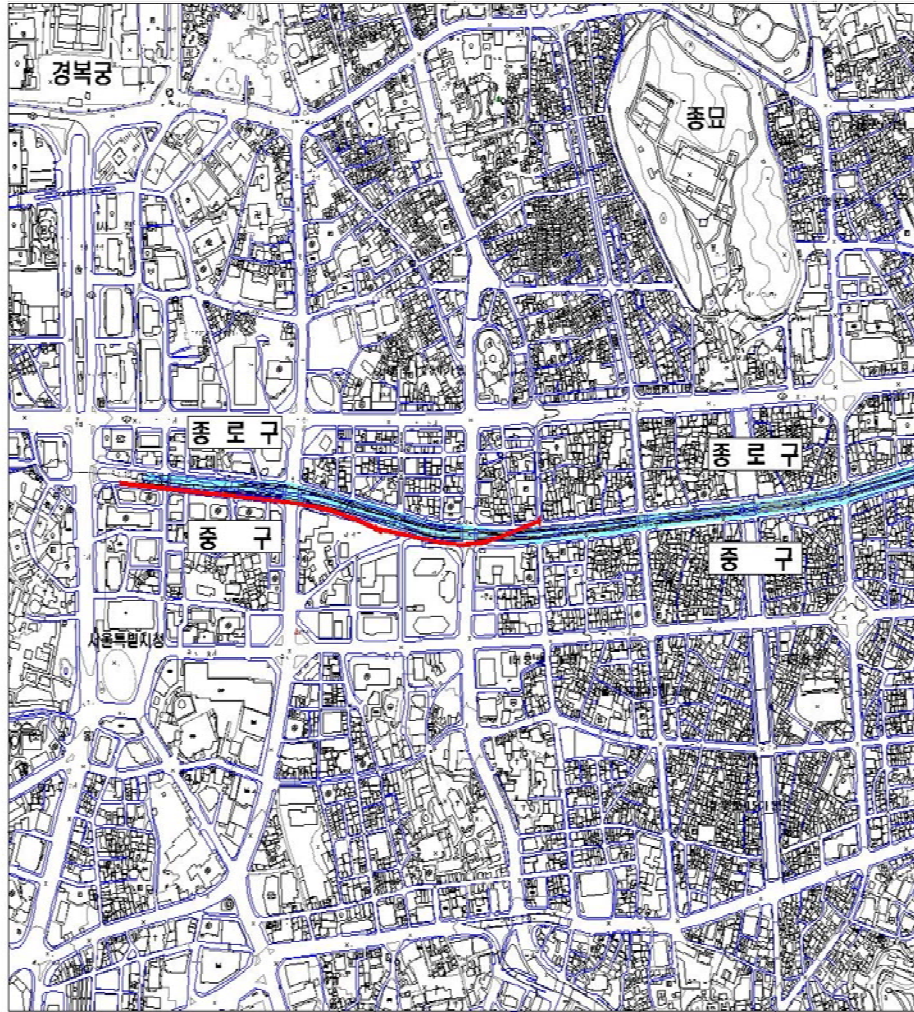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7)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고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별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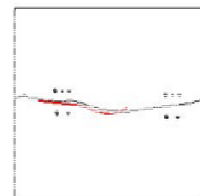
- 전기공급시설(신설)
- 도 로
- 야 경

SCALE = 1 / 5,000

0 100 200 300 400

구분	지점명	면적			면적비율	면적	비고
		구분	기존	신설			
전체	전체면적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신설	신설면적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존	기존면적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합계	합계면적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 색 인 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3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 구역

연번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기정	양평동5가	5번지일대	0.4	210%	50%	2	도시환 경정비	전면	2010. 03. 18. (서고시2010-101호)
	변경	해 제								
연번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2	기정	당산1동	410번지일대	2.1	210%	50%	3	도시환 경정비	전면	2010. 03. 18. (서고시2010-101호)
	변경	해 제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정비예정구역 실효사유 및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 실효일 : 고시 게재일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2133-4644)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2개소)

▶ 양평동5가 5 일대

위 치 도	지형도면
	

▶ 당산1동 410 일대

위 치 도	현황사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4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름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름1등급 토지(비오름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름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 비오름1등급 토지 중 비오름1등급 경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비오름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지 번	지목	필지면적 (㎡)	비오름1등급 토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1	서대문구 홍제동 322-138	대	745	1	감) 1	0	-
	서대문구 홍제동 320-22	도	752	2	감) 2	0	인접필지 정비
	서대문구 홍제동 320-13	도	196	55	감) 2	52	인접필지 정비
2	서대문구 홍은동 8-1551	대	97	21	감) 21	0	-
3	구로구 오류동 156-15	대	23,223	791	감) 791	0	-
	구로구 오류동 156-191	임	556	539	감) 227	312	인접필지 정비
4	강남구 세곡동 92-9	임	1,048	573	감) 259	314	-
5	강남구 자곡동 648	대	5,751	144	감) 144	0	-
	강남구 자곡동 649	대	5,709	71	감) 71	0	-
	강남구 자곡동 650	대	5,904	15	감) 15	0	-
6	서초구 신원동 515	전	274	264	감) 243	21	-
	서초구 신원동 515-2	전	241	57	감) 57	0	인접필지 정비
	서초구 신원동 515-4	전	30	30	감) 30	0	인접필지 정비
	서초구 신원동 516-8	구	788	33	감) 25	8	인접필지 정비
	서초구 신원동 산1-1	임	7,934	7,575	감) 35	7,540	인접필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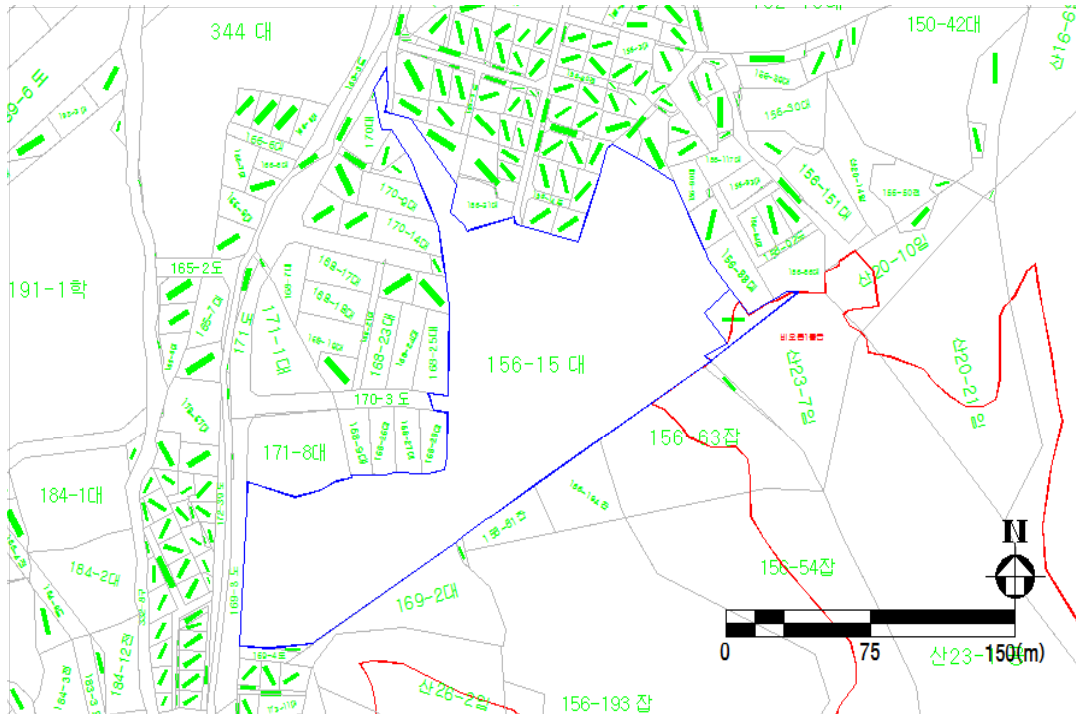
연번	지 번	지목	필지면적 (㎡)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7	서초구 엽곡동 303-2	전	740	94	감) 94	0	-
8	서초구 내곡동 1-1130	전	496	496	감) 496	0	-
	서초구 내곡동 1-1131	전	2,698	661	감) 475	186	인접필지 정비
9	종로구 평창동 492-55	대	609	349	감) 27	321	-
10	성북구 성북동 330-300	대	500	500	감) 189	311	-
	성북구 성북동 330-447	대	657	504	감) 102	402	-

3. 관계도면 :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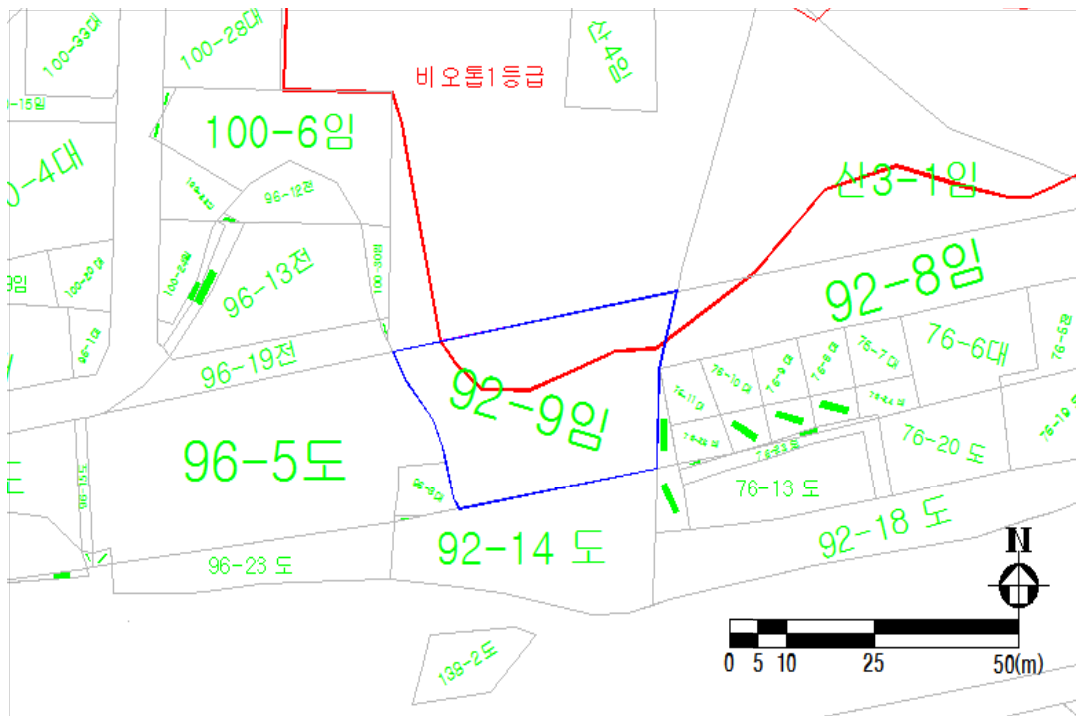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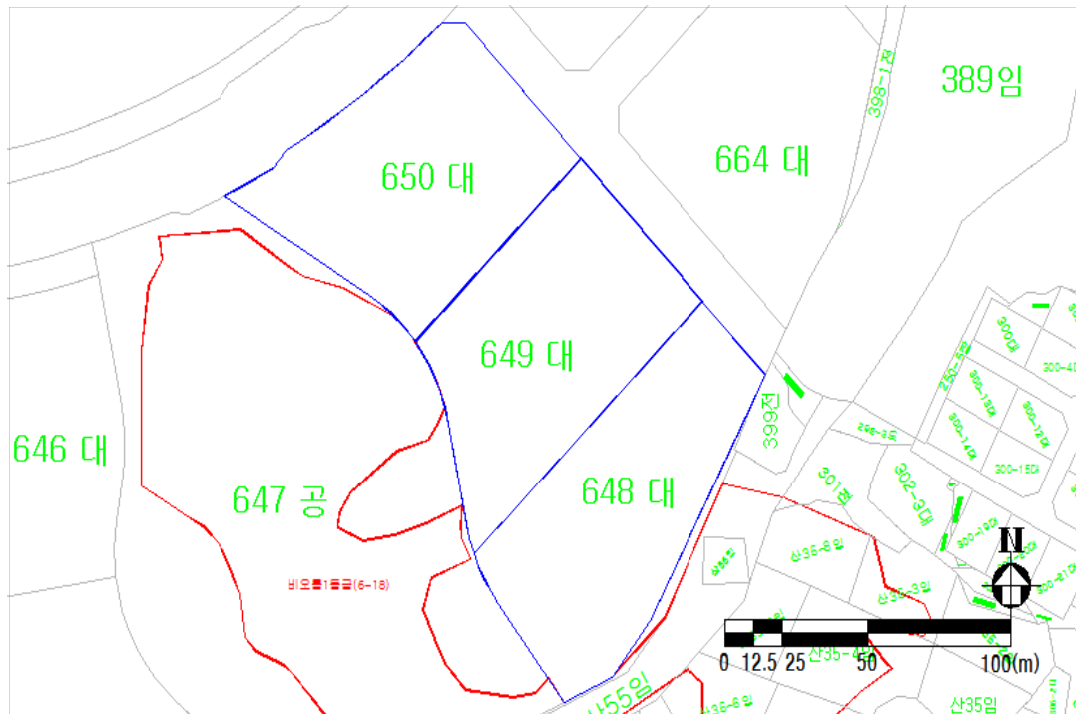
3) 구로구 오류동 156-15 (156-191 : 인접필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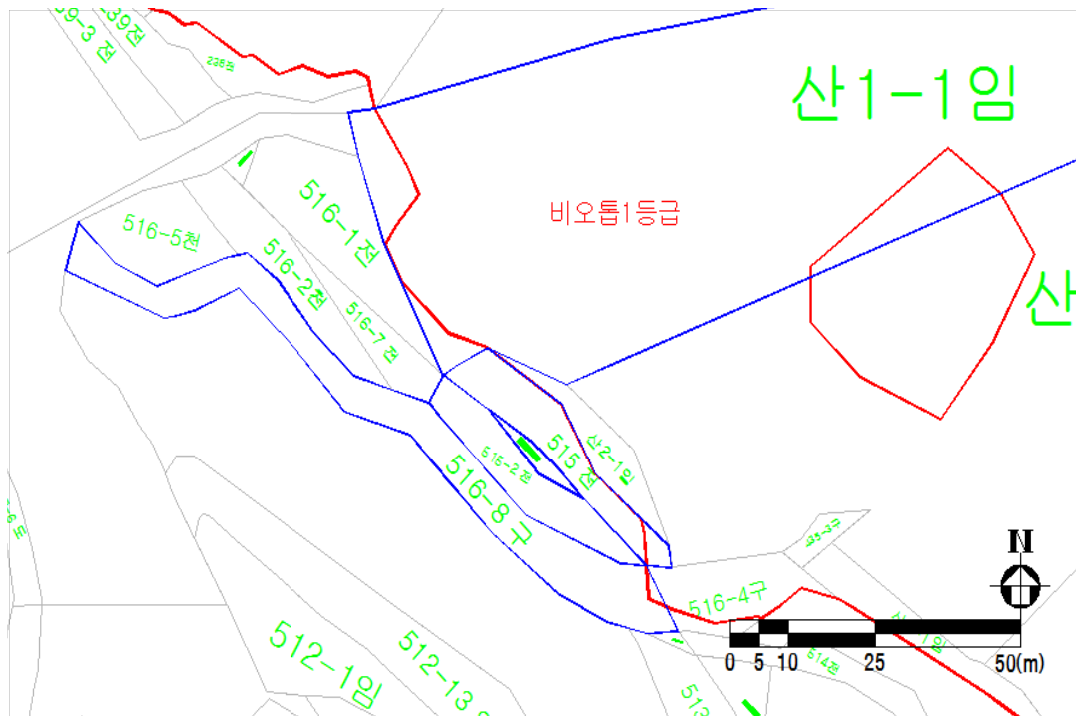
4) 강남구 세곡동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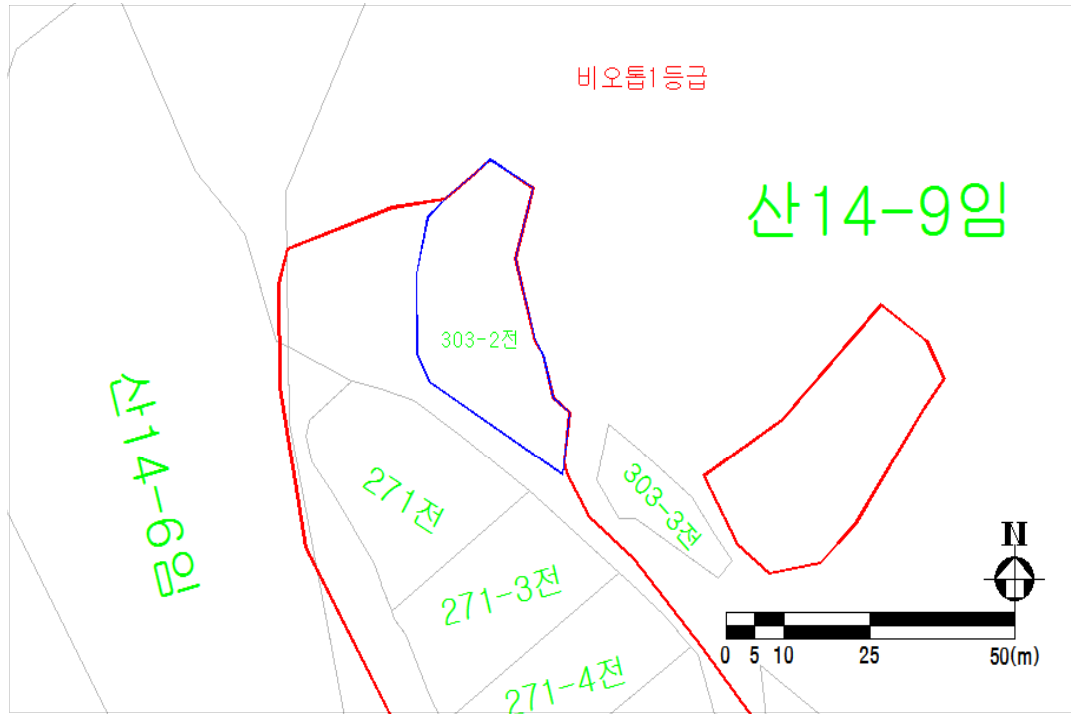
5) 강남구 자곡동 648 / 649 /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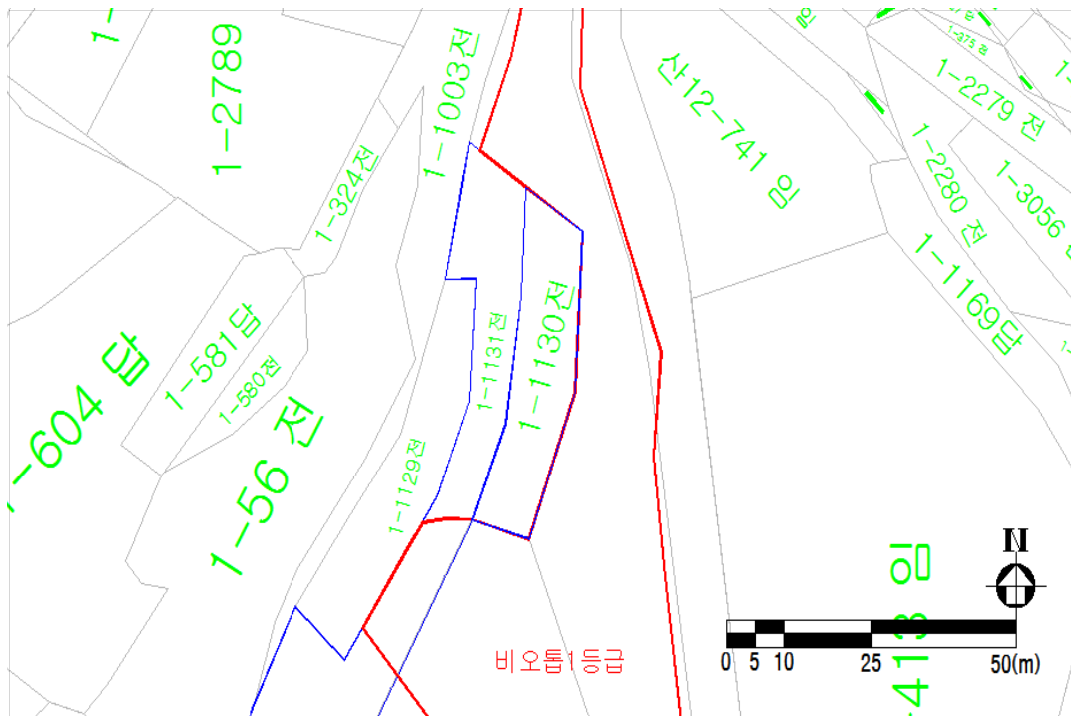
6) 서초구 신원동 515 (515-2, -4 / 516-8 / 산1-1 : 인접필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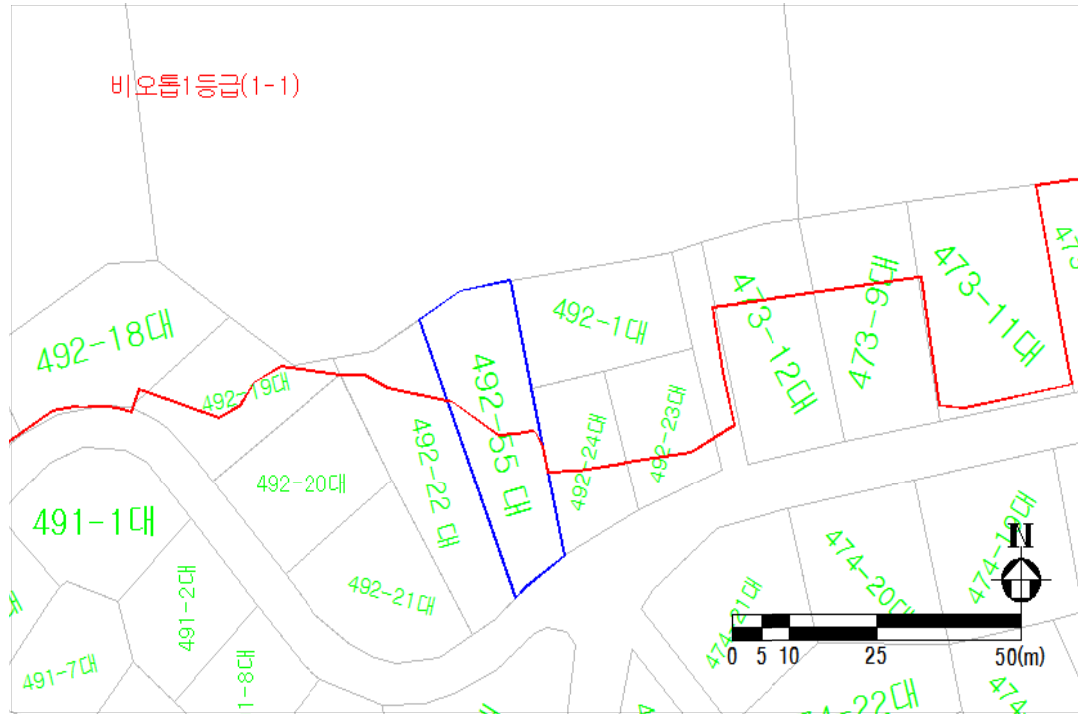
7) 서초구 염곡동 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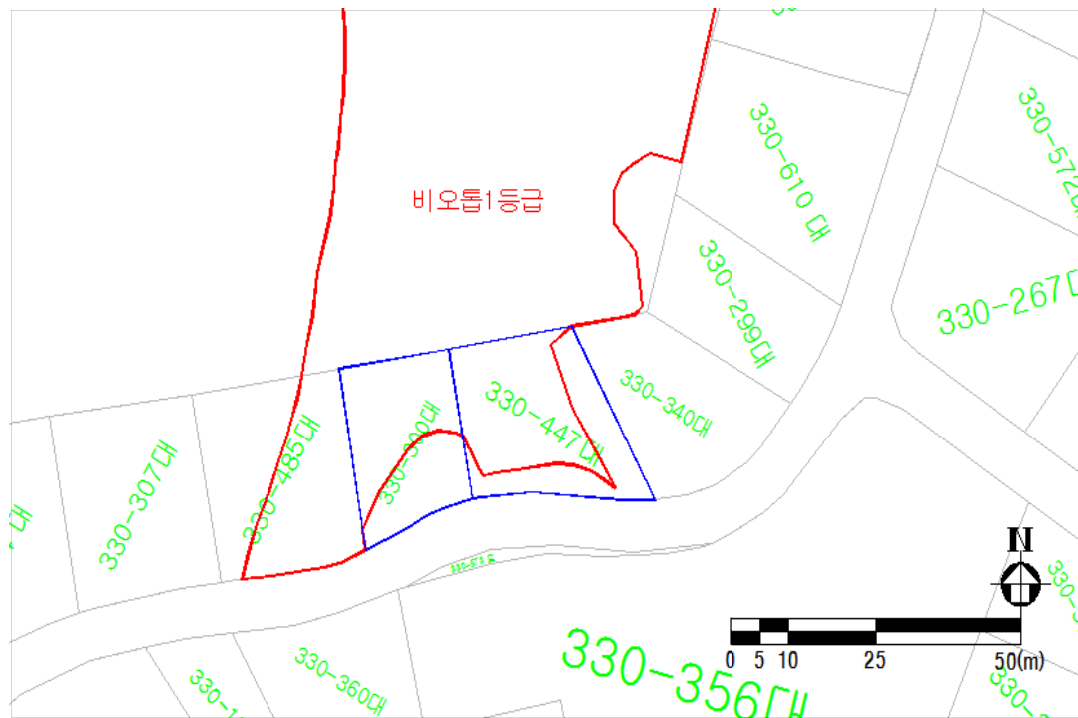
8) 서초구 내곡동 1-1130 (1-1131 : 인접필지 정비)



9) 종로구 평창동 492-55



10) 성북구 성북동 330-300, -44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5호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0호(2006.8.10)로 결정(변경)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논현동 207번지에 대하여 2016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8.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논현동 207번지에 대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58번지 일대	76,430	-	76,430	2006.8.10 (서울시고시 제2006-270호)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 최소개발규모(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조서(변경)

구분	가구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F	①	논현동 207주	1,794.1	1,133.5	• 획지계획 : 간선가로변 적정개발규모 및 맹지형 필지해소
			논현동 207-4대		330.1	
			논현동 207-6대		330.5	
변경	F	①	논현동 207주	1,133.5		• 획지계획 : 간선도로변 적정개발규모
		④	논현동 207-4대	330.1		• 공동개발권장 F-⑤
		⑤	논현동 207-6대	330.5		• 공동개발권장 F-④

※ 상기 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서 : 소유권 단위를 고려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권장)을 통해 개발 가능한 획지계획으로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나.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다. 용적률 계획(변경)

- ① 용적률 기준(변경없음)
- ② 용적률 완화항목(변경없음)
- ③ 상한용적률(변경없음)
- ④ 민간건설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추가용적률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유무기간에 따른 추가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추가 용적률	비 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8년이상	15%	
	임대의무기간 20년이상	20%	• 적용: 논현동207

- ※ 1. 용적률 산정 =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400%) × 임대 의무기간 추가용적률(20%) ※ 80%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4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3. 논현동 207의 임대주택은 최소 20년간 임대할 목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 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 규정을 20년간 준용함

라. 높이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조서(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 도로에 접한 모든 필지는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조성 - 공지에 주차 불가능한 볼라드 설치	변경없음
공개공지	간선도로변	• 공개공지를 가각부에 집중 배치	변경없음
공공공지	간선도로변	• 공공공지를 전면공지로 변경	변경없음
침상형공지		• 지하철역과 인접한 교차가각부 필지는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 (Sunken Plaza)	• 폐지(1개소): 논현동207
쌈지형공지 (연접공지)		• 조성규모 설정 - 최소25㎡(공개공지 45㎡) 이상 - 최소폭 5m 이상	• 신설(1개소): 논현동207
보차혼용 통로		• 간선도로변 차량출입 억제를 위하여 지정	변경없음

■ 변경사유서 : 교차로에 기 조성된 지하철출입구 및 보행특성을 고려한 공지의 형태 변경

나.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 도로변	• 간선도로와 맞은 차량접속 배제를 위하여 지정	변경없음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억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공동주차 통로	간선 도로변	간선도로와 맞은 차량접속 배제를 위하여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 (신설 2개소, 폐지 2개소)	변경없음	-
주차 출입구	간선 도로변	이면부 주차출입이 불가한 획지에 대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조건부) 설치(신설 1개소)	이면부 주차출입이 불가한 획지에 대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조건부) 또는 주차출입구 설치(신설 1개소)	주차출입구 신설(1개소): 논현동 207

■ 변경사유서 : F-①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출입구 신설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축소 (도면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V.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상정안에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다음 사항을 반영

- 쌈지형 공지는 당초 침상형 공지 위치인 각각부에 설치할 것

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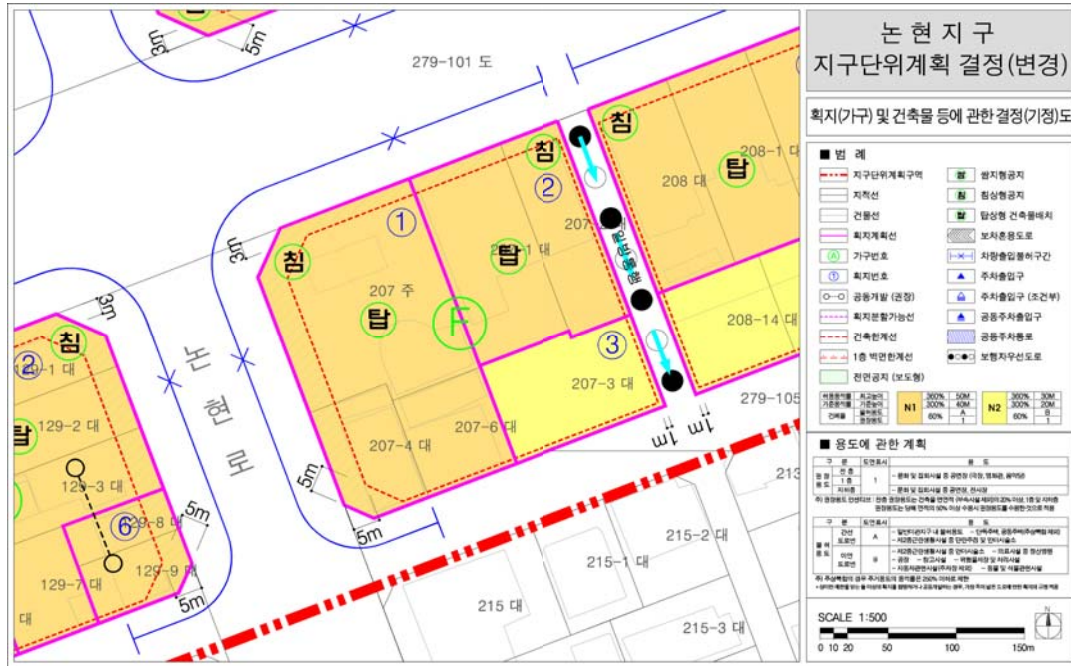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열람장소 :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1)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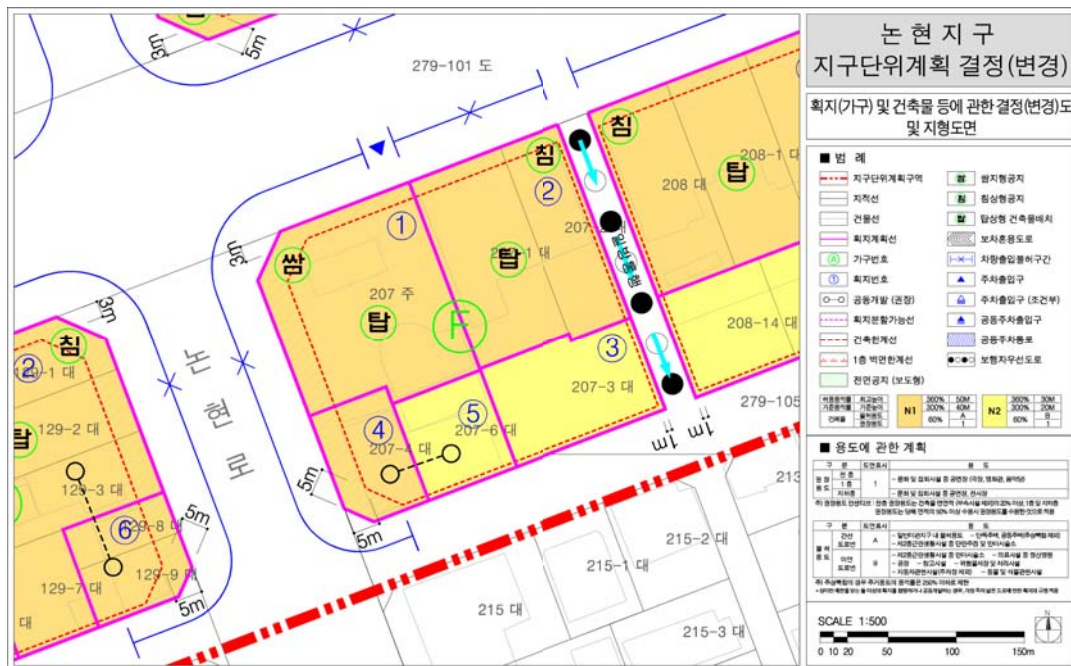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81호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1. 제2롯데 준공, 위례신도시 본격 입주 등에 따른 송파대로 및 탄천 동측도로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03-8~803-20 일원(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나. 사업 개요

- 진입 연결로(Ramp-A) : 연장 548.38m, 폭 6.0m(1차로)
- 진출 연결로(Ramp-B) : 연장 455.53m, 폭 6.0m(1차로)

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위례신도시, 제2롯데 건설 등으로 통행 집중이 예상되는 송파대로 및 탄천 동측도로의 교통수요 분산 도모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마. 공사예정기간 : 2016.12. ~ 2018.12.

바. 연차별 투자계획 :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예정

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공람내용 : 연결로 설치 노선안, 구조물 설치계획, 주변 교통처리 계획 등 기본설계(안)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차. 의견 제출방법 : 의견 내용(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연락처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카. 토지사용(수용) 계획 : 실시설계시 세부 수용계획 수립

타.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91호

2016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통요건

- 1)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나. 공연분야

- 1)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공고일 기준)

다. 전시분야

- 1)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2. 신청기간 : 2016.9.22.(목) ~ 2016.10.6.(목) 【09:00~18:00, 일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분도 2016.10.6.(목)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우 04515)

※ 지정신청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seoul.go.kr의 메인화면 ⇒ 뉴스·소식 ⇒ 공고(고시, 공고)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지정신청서

나.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2133-256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93호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 목적 :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내용 일반인 열람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
 - 가. 계획범위 : 605.21km²(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
 - 나. 주요내용
 - 풍수해 관련 일반현황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하천·내수·토사·사면재해) 및 위험요인 분석
 -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등
3. 열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09.22. ~ 2016.10.21.(30일간)
 - 장소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자치구 풍수해저감 담당부서(안전치수과 등)
4.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내용 등)은 서울시 하천관리과(☎ 2133-3864), 또는 거주 관할 자치구(안전치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96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50003	마제스타프 라퍼티스㈜	김승재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12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2016.9.12.

-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9.13.~2016.10.12.)
-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 전문인력)변경 보고의 무 2차 위반
-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97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40036	엠스퀘어피에프브이(주)	맹진태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12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2016.9.12.

-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9.13.~2016.10.12.)
-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 전문인력)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89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최장선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9길 *, **5호(대덕면)	일시 : 2016-07-06 23:25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IC 내용 : 차량의 제한 길이 2.9m 초과	과태료:30만원
김경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4길 *0-* (선산읍)	일시 : 2016-07-11 22:55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48m 초과	과태료:50만원
김원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길 *3, *층*호(신월동)	일시 : 2016-07-29 04:02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 초과	과태료: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한덕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신성동1가)	일시 : 2016-05-04 04:36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제한 길이 2m 초과	과태료:30만원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632, *0*호(신읍동)	일시 : 2016-05-19 04:18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I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 초과	과태료:30만원
이정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라길 ** (응암동)	일시 : 2016-05-20 15:41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축하중 1.45t 초과	과태료:50만원
박정환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43번길 30, *0*-*02호(양산동)	일시 : 2016-05-27 06:24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6. 10.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서)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110462	(주)대양통신	조익환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46, 5층 (서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 소 전 청문 (2016.10.10.)
2	112036	(주)하나엔티에스	오대영	서울 강서구 허준로 217, 1113동 1호(가양동, 가양테크노타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 소 전 청문 (2016.10.10.)
3	201575	(주)레드텍시스템	한기준	서울 강남구 삼성로108길 8, 3층(삼성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 소 전 청문 (2016.10.1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1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및 별표8의13
3. 공고기간 : 2016.09.19. ~ 2016.10.10.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05호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을 실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목적 :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등의 의견 수렴
2. 공람기간 : 2016. 9. 22 ~ 2016. 10. 6(14일간)
3. 공람장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도시공간개선단(중구 세종대로 110)
4. 공람내용
 - 가. 서울시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나.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 다. 2차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 라.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비전	품격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공간 서울		
3대 목표	시민 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인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공간환경 실현
6대 전략 및 13개 실천과제	1. 건축문화 확산 기반구축 1-1. 건축문화 지원체계 마련 1-2. 시민의 건축문화 이해 증진 1-3. 서울 건축문화 자산 축적	3. 건축디자인 품질 향상 기반 구성 3-1. 공공건축 디자인품질 향상 시스템 구축 3-2. 민간건축 디자인품질 향상 지원시스템 구축	5.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공간환경 조성 시스템 개선 5-1. 365일 안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5-2. 10분 동네 사회서비스공간 시스템 구축
	2. 시민이 만드는 건축문화자산 2-1. 지역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도입 2-2. 시민참여형 지역 공공공간 조성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반 구축 4-1. 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기반 구축 4-2.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6. 지속가능한 녹색 공간환경 시스템 구축 6-1. 건축을 및 공간환경 재생 지원 프로그래밍 6-2. 녹색건축물 및 공간환경시스템 구축

5.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2133-7604(담당: 최태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06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10007	디에스 네트웍스㈜	김영철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 (서초동)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2016.9.13.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9.14.~2016.10.13.)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11호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5호(2013.12.05.)’ 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소규모 단절토지)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망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망우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3,300	증) 18	3,318	
변경	신내	신내동 38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2,361	감) 102	2,259	
변경	상일	상일동 44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7,390	감) 597	6,793	
변경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8,880	감) 8,880	-	구역 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망우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3,318	인접 과소필지 편입 및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도로 제척
변경	신내	신내동 38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2,259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도로 제척
변경	상일	상일동 44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6,793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하천 제척
변경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	대상지 현황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불부합하여 구역 해제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 장소 비치 도서 참조)

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9. 22. ~ 10. 6.(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86)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02-2094-2173)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425-6024)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16-3868)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갈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19호****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정비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2133-8421)

다.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결정(안) 내용

연번	지 번	지목	필지면적 (㎡)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1	종로구 평창동 444-8	대	364	0	증) 128	128	-

※ 제시된 면적은 참고용으로 개별측량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열람내용 : 비오톱등급 변경결정 관련 문서

라. 관련도서

○ 지형도면 : 첨부 #1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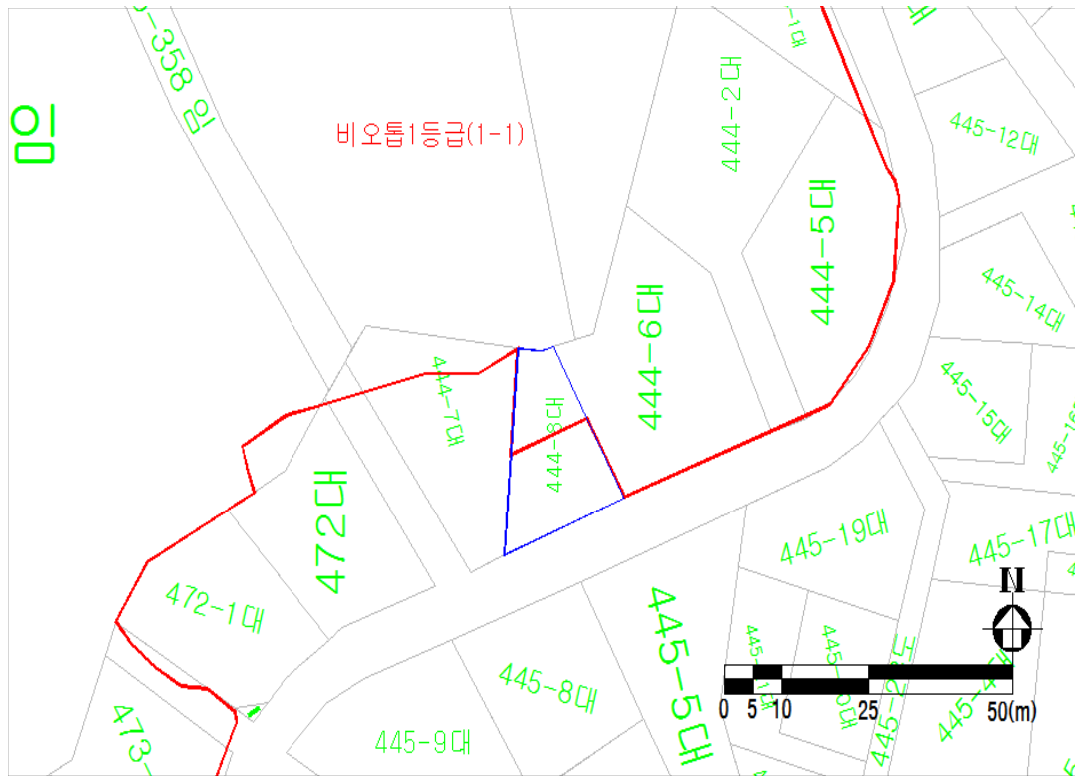
○ 지형도면 이외 기타 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비오름1등급 토지 변경결정 지형도면

(종로구 평창동 444-8)



[서 식]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결정(안)
의 건 제 출 서**

1.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지		관 계	
3. 의 건				
4. 기 타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신 청 자: 서울특별시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가톨릭대학교)**

1. 서울시고시 제202호(2005.7.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이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73호(2013.3.14.)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서초구 반포동 505 일대 가톨릭대학교에 대하여,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구역별 관리계획 : 일반관리, 외부활동, 녹지보존)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3, fax : 2133-0739)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85, fax : 2155-6819)

다.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외부활동, 녹지보존)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

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항[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 학 (가톨릭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일대	110,147	-	110,147	서고-제202호 (2005.7.14)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토지이용계획 중심 관리(6개로 결정) (건축, 녹지, 조경, 운동장, 도로, 주차장) · 건축별 높이 결정	· 지역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역 결정 (일반관리, 외부활동, 녹지보존) · 구역별 높이·밀도 결정

마. 구역별 관리계획 및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923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의견 청취안 (2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2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공동주택과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103호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호(2009.01.22)로 결정(변경)된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명륜3가 112-2호외 4필지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9.01.) 심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종로구청장

1. 결정(변경) 사유

- 당초 불합리하게 결정된 보차혼용통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고자 변경함.

2.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보차혼용통로	· 이면필지의 보행 및 차량 접근성 향상, 원활한 흐름 유도 - 폭원 : 4m	5개소
변경	보차혼용통로	· 이면필지의 보행 및 차량 접근성 향상, 원활한 흐름 유도 - 폭원 : 4m	4개소

※ 명륜3가 112-2외 4필지에 기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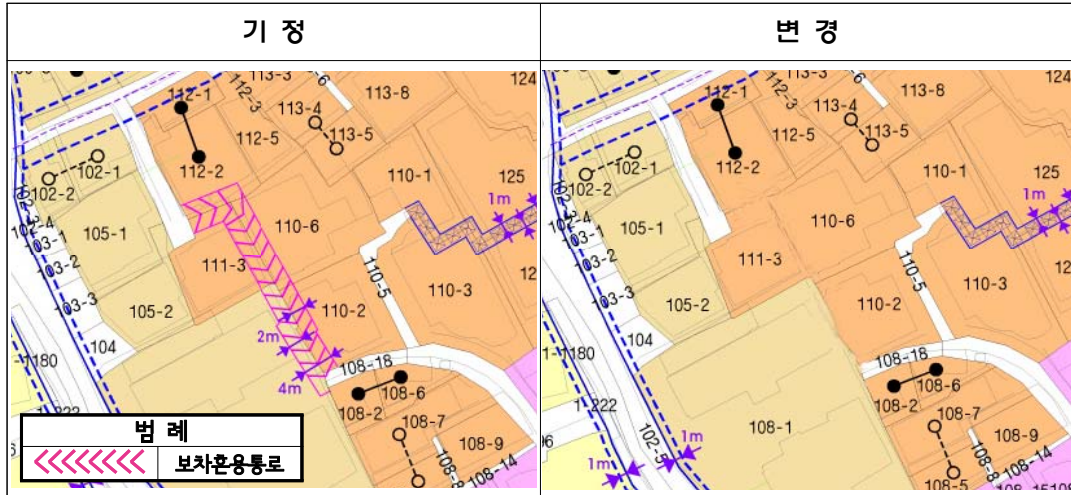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용산구고시 제2016-10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9호(1993. 3. 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6호(2016. 6. 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이 변경결정된 우리구 청파동2가 53-12 일대 숙명여자대학교 내 증축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394)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외 3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2) 명 칭: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플라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돈희
- (2)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2017. 8. 31.

마.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1) 사업시행 면적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숙명여자대학교	80,710.20	79,745.40	80,710.20	증) 964.8㎡

(2)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	건 폐 율 (%)		관리건폐율 (%)	비 고
			기 정	변 경		
제1캠퍼스	40,050.90	34.31	22.61	22.93	34.00	
제2창학캠퍼스	36,219.10	49.84	33.06	33.10	40.00	
기숙사부지	4,440.20	60.00	38.63	38.63	45.00	

(3) 건축물의 규모(용적률)

구 분	구역면적(㎡)	법정용적률 (%)	용 적 률 (%)		관리용적률 (%)	비 고
			기 정	변 경		
①	34,033.90	200.00	160.32	161.57	235.00	일반관리구역
②	36,219.10	200.00	176.68	179.32	190.00	일반관리구역
③	4,440.20	200.00	198.33	198.33	200.00	일반관리구역
④	6,017.00	200.00	-	-	5.00	외부활동구역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필지 수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제 1 캠 퍼 스	1	용산구 청파동 2가	1-171	학	1,309.9	1,309.9	1,309.9	1,309.9	학교법인숙명학원	
	2		47-2	대	207.6	207.1	-	207.1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일부추가
	3		47-3	대	26.4	26.4	-	26.4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4		47-4	대	49.9	49.9	-	49.9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5		47-5	대	195.1	195.1	195.1	195.1	학교법인숙명학원	
	6		47-8	학	3,131.8	3,131.8	3,131.8	3,131.8	학교법인숙명학원	
	7		47-20	대	321.3	321.3	321.3	321.3	학교법인숙명학원	
	8		47-21	대	208.9	200.0	-	200.0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일부추가
	9		47-32	대	11.6	11.6	-	11.6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0		47-40	대	17.5	17.5	-	17.5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1		47-41	대	44.0	44.0	-	44.0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2		48-2	대	405.4	405.4	-	405.4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3		48-3	대	99.9	99.9	99.9	99.9	학교법인숙명학원	
	14		48-4	대	10.2	10.2	10.2	10.2	학교법인숙명학원	
	15		48-12	대	2.9	2.9	-	2.9	학교법인숙명학원	금회추가
	16		48-13	대	7.3	7.3	7.3	7.3	학교법인숙명학원	
	17		53-38	대	20.4	16.5	16.5	16.5	국(기획재정부)	
	18		53-41	학	11,023.4	11,023.4	11,023.4	11,023.4	학교법인숙명학원	
	19		53-39	학	881.8	630.8	630.8	630.8	학교법인숙명학원 국(기획재정부)	지분630.8/881.8 지분251.0/881.8
	20		43-12	학	21,319.4	21,319.4	21,319.4	21,319.4	국(기획재정부)	
	21		53-6	학	1,020.5	1,020.5	1,020.5	1,020.5	학교법인숙명학원	
	소 계					40,315.2	40,050.9	39,086.1	40,050.9	
제 2 창 학 캠 퍼 스	22	용산구 청파동 2가	543	학	1.2	1.2	1.2	1.2	학교법인숙명학원	
	23		54-9	학	11.3	11.3	11.3	11.3	학교법인숙명학원	
	24		64-39	학	9.8	9.8	9.8	9.8	학교법인숙명학원	
	25		144	학	2,727.8	2,727.8	2,727.8	2,727.8	학교법인숙명학원	
	26	용산구 청파동 3가	115	학	13,961.8	13,956.6	13,956.6	13,956.6	학교법인숙명학원	
	27		115-23	학	15,822.9	15,822.9	15,822.9	15,822.9	학교법인숙명학원	
	28		115-33	학	238.4	238.4	238.4	238.4	학교법인숙명학원	
	29		115-34	학	1,257.4	1,257.4	1,257.4	1,257.4	학교법인숙명학원	
	30		115-35	학	0.6	0.6	0.6	0.6	학교법인숙명학원	
	31		115-38	학	1,187.5	1,187.5	1,187.5	1,187.5	학교법인숙명학원	
	32		117-22	학	327.3	327.3	327.3	327.3	학교법인숙명학원	
	33		140-7	학	605.4	605.4	605.4	605.4	학교법인숙명학원	
	34		140-10	학	72.9	72.9	72.9	72.9	학교법인숙명학원	
	소 계				36,224.3	36,219.1	36,219.1	36,219.1		
기 숙 사	35	청파동2 가	1-157	학	4,440.2	4,440.2	4,440.2	4,440.2	학교법인 숙명학원	
	소 계				4,440.2	4,440.2	4,440.2	4,440.2		
합 계					80,979.7	80,710.2	79,745.4	80,710.2		

◆ 성동구고시 제2016-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53-3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주차장	성동구 용답동 53-3번지 외 6필지	-	증) 581.7	581.7	-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신설내용	사 유
-	주차장	• 위치: 용답동 53-3번지 외 6필지 (581.70㎡) • 내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	• 용답상가시장 이용자 주차 편의 제공 및 이면도로 불법 주차 해소

나. 지형도면: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구고시 제2016-50호

중랑구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호(2007.01.25.)로 변경결정된 중랑구 상봉동 128-33번지 일대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중 랑 구 청 장

1.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획지면적	비 고
기정	B2	상봉동 128-33	818.5㎡	획지계획선형 변경 (면적증감 없음)
		상봉동 128-86		
변경		상봉동 128-85	465.1㎡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분할예정선에 의한 획지계획선형 변경	건축물의 건축

※ 기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 없음

2. 관계도서 : 상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붙임)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17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고시 제2016-8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409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중계동 37-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169-409		증)235	23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공공지		노원구 중계동 37-3		증)203	203	제3종일반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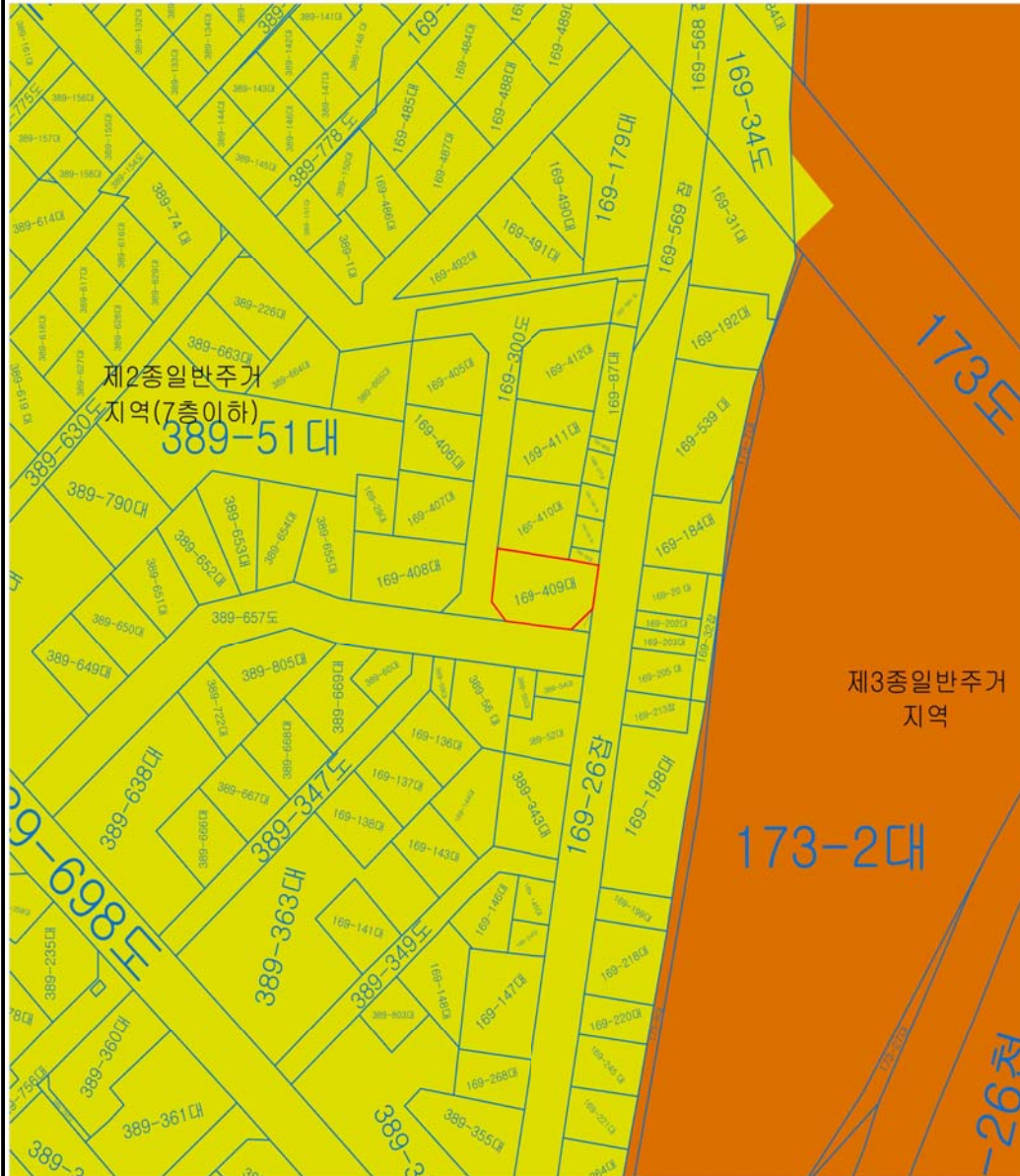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1, 38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S=1:1,000(A4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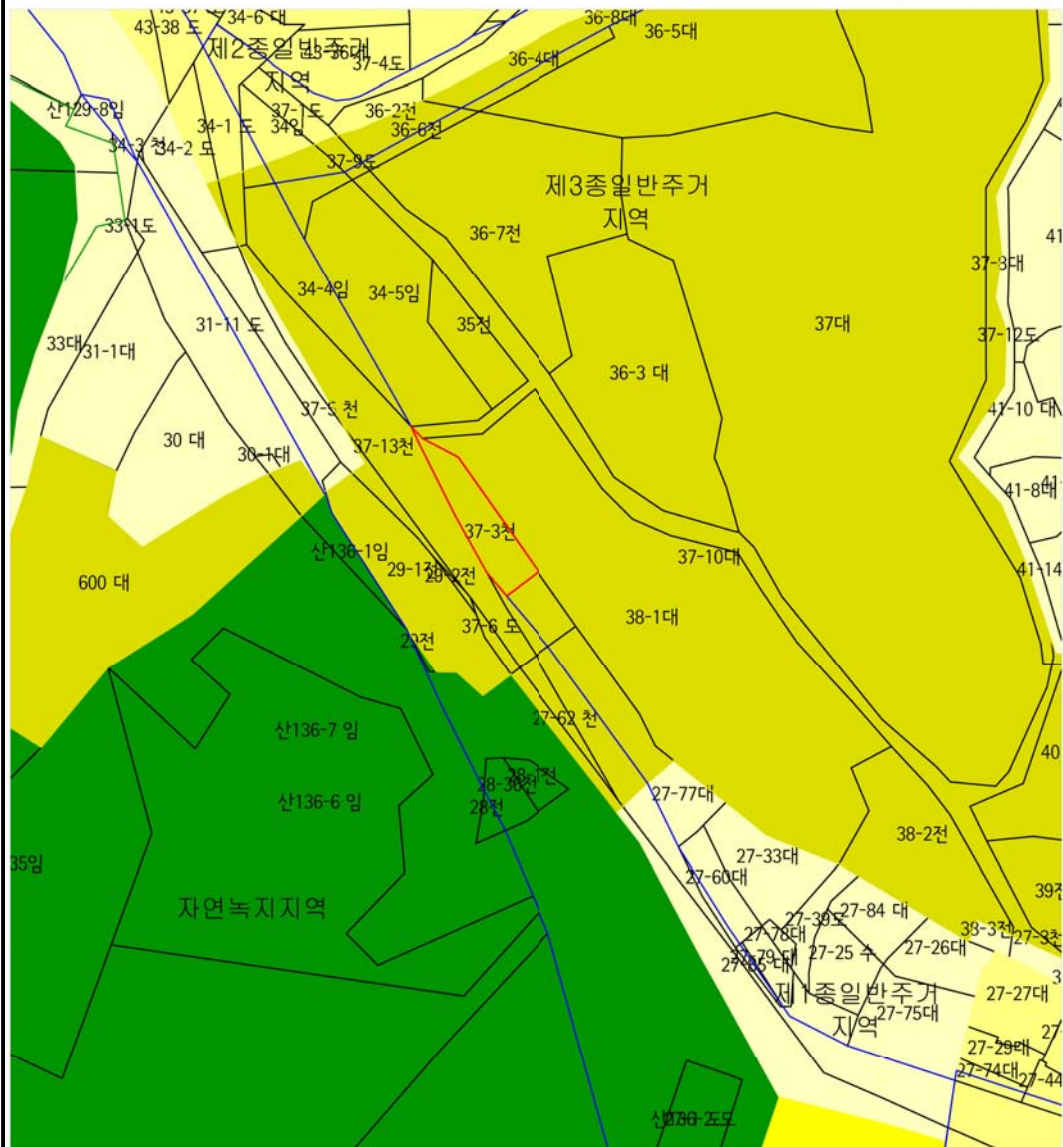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169-409		증)235	235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S=1:1,000(A4 Size)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공공지	-	중계동 37-3 일대		증) 203	203	

◆ 노원구고시 제2016-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70호(2014.2.2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최종)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2-32호(2012.6.14)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26호(2016.4.7.)로 실시계획변경고시(최종),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690호(2016.8. 25.)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 다. 면 적 : 24,351㎡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 등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기간 : 2012. 6. 12. ~ 2016. 11. 30.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변경사항 : 편입할 토지 지번 확정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공원기획팀 ☎2116-3943,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공릉지구)

○ 사업인가일 : 2012. 06. 14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상 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하계동 산16-69	임야	2,500	2,500	임야,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25	임야	2,777	2,777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0	임야	2,025	2,025	임야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1	임야	4,810	4,810	임야,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2	임야	3,810	3,810	임야,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3	임야	2,000	2,000	임야,진입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1-1	답	711	711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1	답	536	536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2	답	1,379	1,379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35	답	503	503	임야,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21-1	답	119	119	경작지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2-1	구거	294	294	경작지	노원구				변경없음											
하계동 46-1	구거	168	168	구거	노원구				변경없음											
공릉동 신2-3	임야	984	984	임야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74	임야	1,300	1,300	임야,경작지, 진입로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하계동 산16-27	임야	25,387	-	임야	변진이씨창성공파종중 ·변진이씨종속공파종회	하계동 31					
									하계동 산16-75	임야	435	435	진입로	변진이씨창성공파종중 ·변진이씨종속공파종회	하계동 31			추가		

◆ 구로구고시 제2016-1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1호(2014.1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6-681호(2016.05.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6-94호(2016.6.1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구로구공고 제2016-1041호(2016.8.25)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된 『천왕동 37-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3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천왕동 37-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6m, 연장37.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신순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26-703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12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의 명 칭 : 천왕동 37-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천왕동 37-2	답	1,983	35	신순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26-703	경서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77-20	근저당권	
	변경	천왕동 37-11	전	39	39	"	"	"	"	"	천왕동37-2
2	당초	천왕동 38-1	전	407	42	김영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43				
	변경	천왕동 38-7	전	44	44	"	"				천왕동38-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관악구고시 제2016-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234호(2016.08.0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1086호(2016.08.29)로 열람공고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봉천동(청룡동) 산174-65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74-657
- 2) 면 적 : 4,883㎡(변경전) → 5,083㎡(변경후)
- 3) 내 용 : 토지보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봉천동 산174-657		11,551	5,083							
1	봉천동 산174-657	임야	4,883	4,883	임야	박용민	11270분의 320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 411동 ***호 (삼평동,뫼들마을)			
2						김춘선	11270분의 1457.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411동 ***호(삼평동,뫼들마을)			
3						김춘식	11270분의 4371.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으로 195, 101동 ***호(불당동,펜타포트)			
4						김춘애	11270분의 1457.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1 ,1003동 ***호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10단지아파트)			
5						이대영	11270분의 779.56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1길52번길 5-*			
6	봉천동 산174-172	임야	6,668	200	임야	박용민	11270분의 320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 411동 ***호 (삼평동,뫼들마을)			
7						김춘선	11270분의 1457.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6,411동 ***호(삼평동,뫼들마을)			
8						김춘식	11270분의 4371.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으로 195, 101동 ***호(불당동,펜타포트)			
9						김춘애	11270분의 1457.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61 ,1003동 ***호 (관평동,대덕테크노밸리10단지아파트)			
10						이대영	11270분의 779.56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1길52번길 5-*			

◆ 서초구고시 제2016-8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구 분	지 번	면적 (㎡)	기 정	변 경	비고
			계획내용	계획내용	
침상형공지	서초동1672-9,11	623	침상형공지(위치지정)	침상형공지(위치지정) 폐지	-

※ 서초동 1672-9,11번지 공공이용시설 계획 : 시설물 5층 100㎡(약30평) 공공이용시설 제공 (5년 무상임대, 관리비 유상)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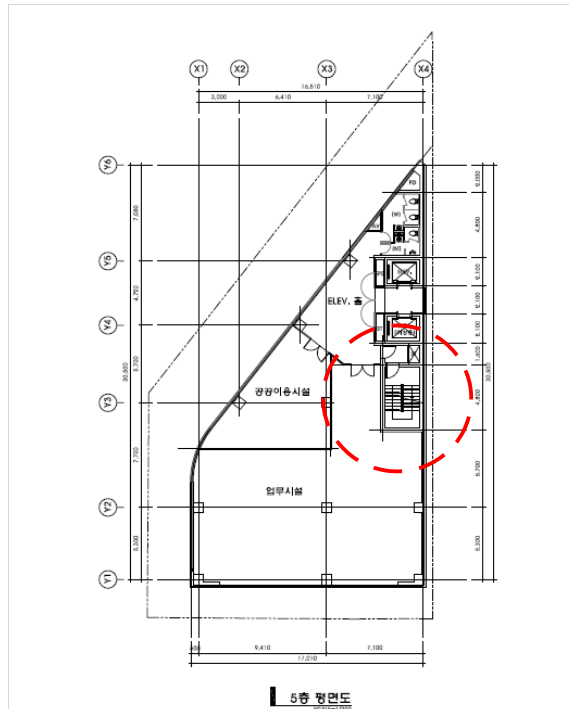
【첨부】

□ 서초동 1672-9,11번지



□ 공공이용시설 계획(서초동 1672-9,11번지)

- 시설물 5층 교차로에 보이는 곳에 100㎡(약 30평) 규모의 공공이용시설 제공(5년 무상임대, 관리비 유상)하며, 이행담보로 건축허가 시 착공전 공증 등 절차 이행



공공이용시설 위치

◆ 서초구고시 제2016-89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서초배수지) 변경(폐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1982.01.19)에 따라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2호(2016.02.25)에 따라 변경결정된 서초동 산165-4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서초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2030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폐지결정된 수도공급설비(서초배수지 :10,000㎡) 부지중 서리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속하여 서리풀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인하여 이미 폐지된 수도공급설비(5,136㎡)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밖에 위치한 수도공급설비(4,864㎡)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서초배수지) 변경(폐지)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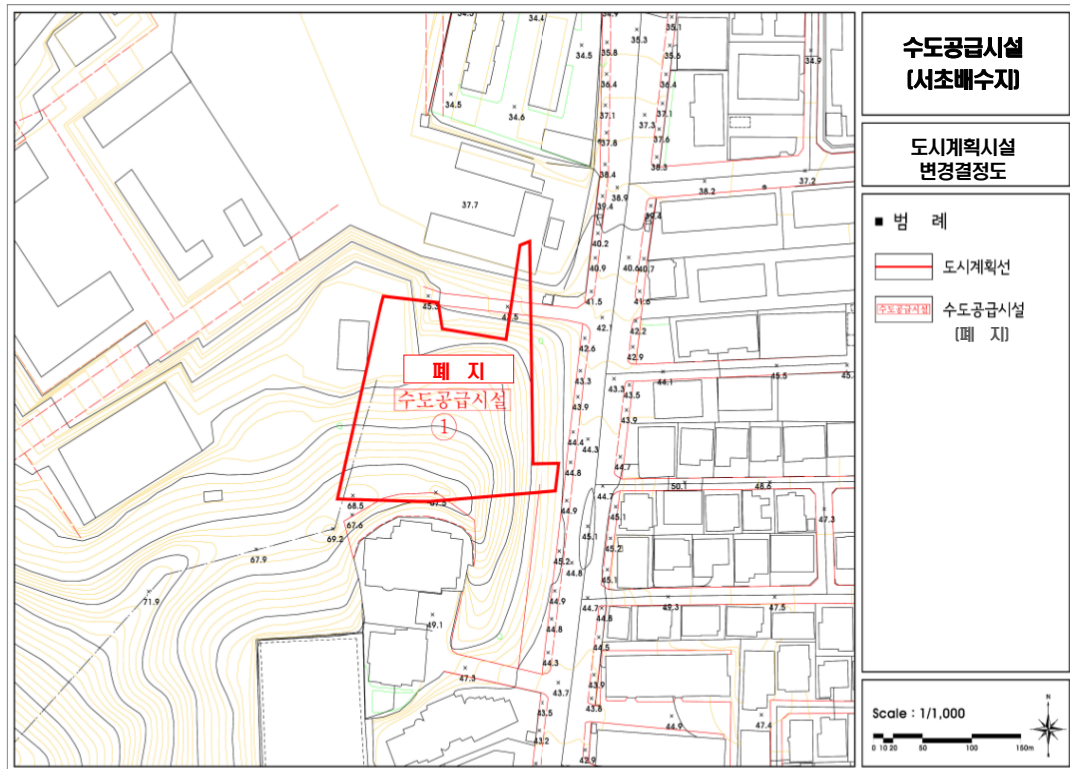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설비 (서초배수지)	서초구 서초동 산 165-4일대	4,864	감)4,864	0	1982.01.19 (서고 20)	폐지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2155-679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포털(<http://www.seocho.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6-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1호(2013.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강남구 공고 제2016-1352호(2016.08.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명칭 : 취락지구(교수마을)기반시설 확충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34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고시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 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아. 관계서류등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02-3423-6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1)

번호	토 지 소 재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비 고
	동 명	지 번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권 리	성 명	
1	자곡동	293-1	도	1,192	343		강남 구청			보상제 외
2	"	307	전	608	76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3-801	이영순			
3	"	300	답	807	46	서울시관악구신림동746-43건영아파트나동212호 서울시강동구둔촌동주공아파트227동302호	백종한 김희태			
4	"	301	답	1,699	25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북2로126(성북동) 305동203호(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박상현			
5	"	293-10	대	349	12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67 철산한신아파트 106-806	김소자	근저당권	국민은행	
6	"	293	대	332	19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4길 13-18 (자곡동)	김주성	근저당권	우리은행	
7	"	292	대	350	8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9-1004	장인호			
8	"	294	답	238	2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4-16 이화빌리지 104호	김덕곤			
9	"	273	잡	278	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4-907	이용옥	지상권 근저당권	국민은행	
10	"	274	대	410	56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힐리 아파트 217-401	김해수 조종배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11	"	275-5	도	22	22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97길 20-2(삼성동)	김영옥	근저당권	하나은행	
12	"	275-4	도	23	23	서울시 성동구 옥수2동 226-10	홍수영			
13	"	275-3	도	8	8	서울시 성동구 옥수2동 226-10	홍수영			
14	"	291-6	도	19	19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97길 20-2(삼성동)	김영옥	근저당권	하나은행	
15	"	291-5	도	31	31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7길 20-2(삼성동)	김영옥	근저당권	하나은행	
16	"	290	대	552	53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2길 56-7 (쟁골마을)	강웅식			
17	"	295	대	165	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08-4 시민아파트 10동 408호	정승완			
소 계					1,10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2)

번호	토 지 소 재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비고
	동 명	지 번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권 리	성 명	
18	자곡동	293-3	도	182	162		강남 구청			보상 제외
19	“	289	대	496	53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365 -16	임승규			
20	“	296-1	대	599	65	서울 강남구 대치동670 동부센트레빌 101-903	김희선			
21	“	288	대	655	33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334 (16블럭 5호)	로이스기 계 주식회사	근저당권	중소기 업은행	
22	“	298	대	423	9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02-6	전임진	지상권 근저당권	농업협 등 조합	
23	“	293-2	도	93	93		강남 구청			보상 제외
24	“	304-1	구	1,717	198		강남 구청			보상 제외
25	“	288-1	대	509	53	서울광진구아차산로262썬동,3303호 (자양동,더샵스타시티)	이청수	근저당권	백남일 하나 은행	
26	“	297-2	대	62	62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동로213, 에이동 1602호 (여의도동여의도금호리첸시아)	이문자	지상권 근저당권	우리 은행	
27	“	287	대	228	18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446-10	임정수 남상옥	근저당권	한국외 환은행	
28	“	286	대	645	89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446-1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7,102동906호 (가락동)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7길 12-7(자곡동)	남상옥 임희정 임효정			
29	“	285-2	도	39	22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2	안동수	근저당권	하나 은행	
소 계					857					
합 계 (1+2)			29필지		1,963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6-65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8.)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및 건설교통부고시 2000-362호(2001.1.6)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외 3필지 상 용산민자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재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이나 E-mail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층 ☎ 2199-7403, E-mail : dhkd516@yongsan.go.k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일대	117,290	증)848.5	118,138.5	서울시고시 제2001-229 (2001.7.10)	편입토지 대장면적과의 오차에 따른 단순면적 정정

※ 1.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함.

2. 「경부고속철도 용산민자역사 건설사업」 실시계획(건고시제2001-339, 2001.12.20)시 역사신축 대지면적은 126,930.7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0117,290.0	증) 848.5	118,138.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87,967.6	증) 636.4	88,604.0	75.0	
일반상업지역	29,322.4	증) 212.1	29,534.5	25.0	

※1. 특별계획구역 단순 면적 정정(편입토지대장 면적과의 오차)에 따른 면적 증가

2.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면적만 기재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지역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	불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철도(역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규모 완화 - 바닥면적 제한 적용 제외 : 판매시설, 업무시설	
밀도	건폐율	●조례에 따름	●3종일반주거: 현황 49.54%/ 계획안 :49.77% ●일반상업 : 현황 47.35%/ 계획안 :50.10%
	용적률	●기준 : 250%이하 ●허용 : 250%이하	●현 황 : 142.11% ●계획안 : 181.38%
높 이		●최고높이 150m이하	●현 황 : 55.0m ●계획안 : 63.1m
토지이용		●복합역사 - 기존 역사시설 및 고속철도 역무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축선		●건축한계선 10m	
공공보행통로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폭10m)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지상3층 통과(기조성)
공공시설계획		●공공공지 설치 : 면적 11,900㎡	●공공공지(전면 역광장) 기조성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규모	계획 내용
			보행연결브릿지	3층	길이 160m, 폭 5m	- 용산복합역사~용산관광호텔 공공보행통로 연결 - 무빙워크 설치
			공공보행통로 환경개선	3층	길이 140m, 폭 14~18m	- 문화전시시설 및 휴게시설 - 관광안내데스크
			Grand Canopy	4층	높이 17m, 폭 21m 면적 1,870㎡	- 문화공연 및 휴게시설 등 - 지상1층에서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 설치 - 자연채광 확보
	공공 편의시설	회의실 등	2층	전용면적 233㎡이상	- 역 이용객 및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무상제공 - 의무실 무상제공	
		의무실	3층	전용면적 44㎡이상		
주1)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공공기여의 세부적인 용도, 배치, 조성형태 등은 인수자와 준공 전까지 협의 완료함.						
기타	●용산역 동서간(한강로변~청파로) 차량이 통과하는 연결통로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주변 건물 위에서 내려다 보여지는 역사 지붕(옥상)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차량연결통로(기조성) - 지상3층 환승주차장 통과 동선 ●역사지붕 옥상녹화 및 풋살장 등 조성

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번지 외 3필지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3) 사업의 명칭 : 용산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4) 사업의 규모 : 시설면적 126,930.74㎡
 ●대지면적 : 118,138.5㎡ (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면적 적용)

명 칭	시설규모(㎡)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용산 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면적	57,459.84	증) 1,435.06	58,894.90	●증축-1F~9F:판매,업무,문화및집회,운동시설,공용,주차장,기계 등 ●용도변경 -4F: 공용→판매 -6F: 문화및집회 → 판매 -9F: 문화및집회 → 운동
	연면적	278,105.21	증) 63,648.68	341,753.89	
	높이	B3F~10F/ 55m	증) 8.1m	B3F~10F/ 63.1m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현대아이파크몰 대표이사 양창훈,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 6) 사업의 착수예정일 : 착공신고일
 - 7) 준공예정일 : 착공신고일로부터 21개월
 - 8) 자원조달계획 : 본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
-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양천구청고 제2016-997호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호(2008.2.21.)로 결정 고시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목동 604-9호 외 1필지 : 획지단위 공동개발 및 건축선]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3)에 비치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6.09.22.~2016.10.07.(15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3)
3. 열람의견 제출장소 : 위 열람장소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가.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11	기정	③	소		계	838.0	획지단위	공동개발			
			양천구		목동 604-8대	508.1					
			양천구		목동 604-9대	166.9					
			양천구		목동 604-11대	163.0					
	변경	③-1	양천구		목동 604-8	508.1	획지단위개발	획지계획 용적을 인센티브 제외			
			소		계	329.9	획지단위		공동개발		
		③-2	양천구		목동 604-9대	166.9					
			양천구		목동 604-11대	163.0					

나.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1m
변경		•이면도로변	•1m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목동 604-9, -11번지 내 건축한계선 1m 신설

※ 이외 다른 변경사항 없음

5. 관계도서

◆ 강서구공고 제2016-11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6.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180 ~ 마곡동 362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 : 강서구 방화동 180~마곡동 362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 : 도로개설(B=10m, L=500m) 등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 성 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6.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면,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없음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4)

◆ 구로구공고 제2016-1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1. 구로구공고 제2016-902호(2016.07.21)로 열람공고한 가리봉동 115-12 ~ 110-17간 도로확장 및 구간연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도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재열람사유

- 구로구공고 제2016-902호(2016.07.21)로 열람공고한 가리봉동 115-12 ~ 110-17간 도로확장 및 구간연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계획(안)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60	가리봉동 115-12	가리봉동 110-17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6호 (1988.03.28)	도로확장 및 구간연장
변경	소로	2	-	8~9	국지 도로	377	가리봉동 115-12	가리봉동 122-29	일반도로	-		

2)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3	소로 2	•도로확장 및 구간연장 (B=6⇒8~9m, L=260⇒377m)	•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리봉동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시설이용에 필요한 접근로와 낙후된 가리봉동 지역발전을 위해 중심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다.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및 도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44), 도로과(☎860-3126)

구로구청홈페이지(<http://guro.go.kr>→고시·공고),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 (대표 류진수)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성산대교 ~ 가양대교	동력선 2척(31㎡) - 모터보트 2척	수상레저사업	2016.9.10. ~ 2016.12.31	2016. 9.9.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18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9.22. ~ 2016.10.5.(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0.6. ~ 2016.10.19.(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265	이*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	***동 ***호 (정광산호아파트)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276	유*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부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씨리로 ***	E동 ***호 (정다운마을 기숙사)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21	문*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신정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22	고*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길 **	***호 (남가좌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31	박*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능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38	김*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번길 **	***동 ***호 (송내동, 송내 자이)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40	윤*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	***호 (화전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43	남*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반포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46	유*홍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길 **	(공덕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48	박*남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다길 **	***호 (동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49	김*국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당로*길 *-*	***동 ***호 (상도동, 상도현대아파트)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50	김*국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당로*길 *-*	***동 ***호 (상도동, 상도현대아파트)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51	정*섭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길 **	(오류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53	(주)**캡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원로*길 ***	(서초동, 구유빌딩)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56	남*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반포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70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길 ***	(석관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77	이*규	지정된 장소에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56,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78	박*중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번길 ***	***호 (연수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79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483	장*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옥탑층 (연남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86	장*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옥탑층 (연남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495	강*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노량진동, 잠카드어린이집)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02	함*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길 **	***호 (양재동, 두성빌딩)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04	이*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발로 ***	***동 ***호 (공릉동, 풍림아파트)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05	이*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	***동***호 (신동, 래미안영통마크원아파트)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06	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08	유*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호 (신대방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13	W** *+HAO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	***호 (하왕십리동)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7	002517	남*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	***호 (삼선동*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19	이*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정목**안길 **	(공덕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23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	(송정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25	김*중	동물학대 또는 포획	100,000	8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독점로**가길 **	(자양동)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27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번길 **	***호 (응문동, 센트럴빌)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30	엄*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로***번길 *	***동 ***호 (석남동, 프라임빌)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31	하*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길 ***-	(신길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42	도*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상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43	황*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길 **	코지빌 ***호 (정릉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46	이*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가길 **	(원효로*가)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48	김*철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시영**길 **	신성차이즈(아) *차*** (상동, 신성하이츠)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50	유*식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56,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길 ***	B**호 (신월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54	구*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	***동***호 (은행동, 시흥 은행*차 푸르지오)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58	이*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토공원로**길 **	***호 (회곡동, 대호하이츠맨션)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60	장*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	***호 (응암동, 응암아네스트)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61	정*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	***동***호 (선부동, 군자주공아파트)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65	오*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길 **	***동 ***호 (개봉동, 상우아파트)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68	김*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가길 **	(마장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69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구의동)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73	박*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레*길 ***	지층 ***호 (성수동*가)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575	윤*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공원 ***	(성북동*가, 휴아를 스튜디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79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호 (강일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80	조*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길 ***-	(서초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84	이*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동 ****호 (송전마을뜨란채*단지아 파트)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85	현대*** 주식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	(대명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88	김*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재고분로**길 *-*	***호 (잠실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90	계*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자양동)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91	현*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길 ***-	(중화동)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92	김*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길 **	***호 (면목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93	함*옥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가길 ***-	B**호 (임사동)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594	LIU ***GDA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길 ***-	(자양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620	(주)*** 건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	***호 (석남동, 청산빌딩)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21	ALI S***ID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석남동)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27	황*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가길 *	(자양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29	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호 (가산동, 대림테크노터운*차)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30	홍*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	***동 ***호 (상대동, 도인휴먼시아*단지)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36	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독산동)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39	이*진, 황* 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길 **	***호 (둔촌동, 선린맨션)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40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호 (화곡동, 호성파크맨션*차)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44	장*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	***동 ***호 (성수동*가, 쌍용아파트)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47	김*홍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	(용답동)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54	한*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번길 *--**	***호 (안양동)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62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	***호 (문서동, 두손에어퍼스텔)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70	㈜***플랜 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길 **	*층 ***호 (서초동, 탐스벤처타워)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74	아*봉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디길 *-*	***호 (회곡동)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76	류*남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아파트)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80	박*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바길 *-*	가동 ***호 (오류동, 수림연립)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82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강서구염창동	****-**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94	㈜***리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	*층 (원효로*가)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95	하*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나길 *	***호 (행당동)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96	손*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나동 ***호 (연희동, 화이트빌)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698	김*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길 **	지층 (밤배동)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03	문*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	다동***호 (목천동, 현대연립)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18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길 *	***호 (대조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19	홍*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길 *	(지양동)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25	Z*O M**GJ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	(오금동, 금호빌딩)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27	장*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30	김*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중곡동)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31	전*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길 **	***호 (자양동, 자양빌라)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32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	(천북면)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33	신*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	***호 (천호동,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시티)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35	이*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돌레*길 *	B동 ***호 (성수동*가, 성수빌라)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38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구의동, 성광빌라)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원회과태료	2016-07	002741	강*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길 **	(성수동*가)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42	김*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길 ***-	(성내동)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43	주식회사 한국*** 기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길 **	***호 (거여동)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48	조*남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길 ***-	(중화동)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49	한*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로공원로**길 ***-	***호 (화곡동, 와이앤비)
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55	이*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	***동 ***호 (회경동, 회경동중앙아파트)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61	황*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길 *	***호 (신정동, 모닝하이츠*자)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7	002762	비***톤 (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마길로 ***	***호, ***호 (상대원동)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8	002831	김*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길 ***-	*층호 (천호동)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18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9.22. ~ 2016.10.5.(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0.6. ~ 2016.10.19.(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돌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7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김*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기로**길 ***-	*층 ***호 (홍은동, 필하루스)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3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주)비***테크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북로 **	()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9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	(장평동,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5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이*형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	***동 ***호 (하왕십리동, 메트힐*)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1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이*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름마당로*길 **	***호 (합정동, 등하빌라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2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송*혁	폐문부재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	(신일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강*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길 ***-	***호 (화곡동, 성현하이츠빌라)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4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이*,이*연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번길 **	(탑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8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이*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길 ***-	***호 (신정동, 도양라비앙빌)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1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정*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동 ***호 (상암동, 삼성빌라)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3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외의 주차행위	50,000	정*희	폐문부재	충청북도 충주시 하단*길 *	하버드빌 ***호 (단월동, 하버드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기본주소	상세주소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9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김*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니동 ***호 (종암동, 한일빌라)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3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조*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자양로**나길 *	B동 ***호 (구의동, 현대파크빌라)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4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장*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독섬로 ***	***동 ***호 (자양동, 우성*차아파트)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4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김*심, 김*옥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동 ***호 (천원동, 천원엔지타운*단지)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90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전*태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능안길 **	(식사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8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이*중, 이*경, 이*호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	***호 ()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8	00087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50,000	이*기	수취인부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번길 **	***동 ***호 (동천동, 동문그린아파트)

◆ 송파소방서공고 제2016-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라목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송 파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16. 9. 22. ~ 2016. 10. 6.(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업 ‘경 고(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임하기[(주)태광이엔지]					
	주 소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40번길 37, 남양주양지 e편한세상 1단지 112동 2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 고(시정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4호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1]의 2.개별기준 라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종선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번호	02-431-4109
		전자우편	pbada93@seoul.go.kr			팩스번호	02-3402-1190
	제출기한		2016년 10월 18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431-41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권영신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61길, 30-9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산 93-4
 - 면 적 : 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존 주택 진입로 설치
 - 내 역 : 도로 83m(B=6m)
5. 점용기간 : 2016.09.19.~2021.09.18.(5년)

정 정

◆ 정 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26호

서울시보 제3370호(2016.9.13.(화))에 게재 · 공포된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26호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전)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2016.05.30.~2021.05.29.(2016.09.19.~2016.07.29.)
<변경>2016.05.30.~2021.05.29.(2016.09.19.~2016.10.05.)

(변경후)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2016.05.30.~2021.05.29.(2016.05.30.~2016.07.29.)
<변경>2016.05.30.~2021.05.29.(2016.05.30.~2016.10.05.)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